

2022학년도

스스로 새롭게 더불어 행복한 도일교육
2022 도일초등학교 학교규칙



도 일 초 등 학 교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명칭 및 위치	2
제 3 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 휴업일	2
제 4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제 5 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졸업	3
제 6 장 입학 · 전·편입학	6
제 7 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8
제 8 장 기타 비용의 징수 등	9
제 9 장 학생 포상 및 징계	9
제 10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0
제 11 장 보칙	10
부칙	11

I. 도 일 초 등 학 교 학 칙

전 문

이 규칙은 학생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시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도일초등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학교의 적정한 관리 운영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과 동시행령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기타 법령 사항 이외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휴업” 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 ② “수익자부담경비” 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4조 【교육목표】 본교는 ‘스스로 새롭게 더불어 행복한 도일교육’ 을 교육지표(비전)로 삼으며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어린이
2. 배려와 나눔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
3. 새롭게 생각하는 창의적인 어린이
4. 감성과 꿈으로 삶을 가꾸는 어린이

제 2 장 명칭 및 위치

제5조 【명칭】 본교는 도일초등학교라 한다.

제6조 【위치】 본교는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 465번길 7(거모동)에 둔다.

제 3 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 휴업일

제7조 【수업연한】 초·중등교육법 제39조에 의거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동법 제27조에 따른 조기 진급제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시행 지침에 따른다)

제8조 【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로 한다.

제9조 【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 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10월 2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무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3, 4, 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 4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1조 【**학급 수 등**】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 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 5 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졸업

제12조 【**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경기도 초등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3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체험학습은 국 내·외 구분 없이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가족 여행, 경사 참석,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체험 활동 등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20일 이하(공휴일, 방학, 개교기념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서면 또는 문자) → 현장(체험)학습 실시 →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 확인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관련 서류 보관기간은 **5년간 원본을 보관하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산정 단위는 1일 단위로 한다.
- ⑥ 학교장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을 해당 학년 범위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탁 받은 학교장은 나이스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재적학교에 송부한다.**
- ⑦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할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출석】 ①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학교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업일수를 이수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학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가정 사정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학급담임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체험학습 등의 사안 발생 시 학급담임은 즉시 나이스 출결사항에 기록한다.

제16조 【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학부모들의 집단 학생등교거부로 인해 발생한 결석도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연간 출석 인정 일수(20일 이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57일 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2021년 개정 유지 2022.3.1.부터 적용)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 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호,

'12.2.20)를 근거로 함) 출석으로 하며,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2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제17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18조 【평가】

① 미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방법 혁신으로 당해년도 학력평가 계획에 의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한다.

제19조 【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6 장 입학·전·편입학

제20조 【입학】 입학은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으로 매년 동(洞)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신입생으로 한다.

제21조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 ① 학부모가 조기입학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은 학교장의 별도의 허용절차 없이 신입생으로 한다.
- ② 학부모가 입학연기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아동은 학교장의 별도의 허용절차 없이 입학이 연기된 것으로 한다.

제23조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귀국학생 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같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4조 【재취학】

- ① 의무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한다.
- ② 타교에서 유예, 면제된 자가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본교에 재취학할 수 있다.

제25조 【전학】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 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 【독촉 · 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⑥ 무단결석에 대한 기간별 관리·대응 절차는 교육부 매뉴얼에 따른다.

제27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① 초·중등 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을 한 학생에 대하여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 7 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제29조 【조기진급, 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 ①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 ②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30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 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평가를 위하여 조기진급, 졸업, 진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대한 규정에 따르고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기타 비용의 징수 등

제31조 【기타 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 9 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2조 【학교생활인권규정】

- ① 학교생활규정을 ‘도일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 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 【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 【훈육·훈계 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도일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준한다.

제 10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6조 【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일초등학교 학생자치회를 둔다.

② 기타 학생자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37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운영】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 『도일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준한다.

제 11 장 보 칙

제39조 【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2004년 3월 3일)
- ② 이 학칙은 200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1차 개정, 2005년 4월 8일)
- ③ 이 학칙은 200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차 개정, 2006년 4월 3일)
- ④ 이 학칙은 200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3차 개정, 2007년 4월 13일)
- ⑤ 이 학칙은 201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4차 개정, 2011년 11월 18일)
- ⑥ 이 학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차 개정, 2012년 12월 1일)
- ⑦ 이 학칙은 201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6차 개정, 2013년 10월 27일)
- ⑧ 이 학칙은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7차 개정, 2016년 3월 24일)
- ⑨ 이 학칙은 2018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8차 개정, 2018년 4월 5일)
- ⑩ 이 학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차 개정, 2019년 4월 10일)
- ⑪ 이 학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코로나19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도
교육청 지침)
-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⑫ 이 학칙은 **2022년 7월 12일(개정일)**부터 시행한다.(제11차 개정)